제63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5. 11. 3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’25. 11. 3. (월)

○ 출석위원(5명)

- 오균 행정사회분과위원장(주재)

- 민간위원 : 박선규, 이민창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2025-355	노동부	고용보험법 개정안	심의안건

Ⅲ. 회의 결과

○ (심의) 「고용보험법」 개정안(노동부, 2025-355호)

소관 부처	노동부
규제사무명	**고용보험 근로자의 적용기준(소득) 개편**(안 제10조제1항제2호)
논의내용	○ **국세청 소득신고 체계와 연계**하여 **고용보험 가입 여부**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고, 현행 소정근로시간 기준에서 발생하는 **가입 누락 문제를 해소**하기 위해 **보수 기준으로 전환**할 필요가 있으며, - 고용보험은 **실업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**을 위한 핵심 **사회안정망**으로, 본 개정안은 단시간·비정규직 등 **취약계층의 보호** 범위를 **확대**하는 제도 개선임 ○ 다만, **중소기업·소상공인**의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**규제 차등적용** 여부를 검토하고, **현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** 마련이 요구됨
위원회 결정 내용	○ **고용보험 적용기준**을 **소득**으로 **전환**하는 것은 **국세 자료 연계**를 통해 가입 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고, **근로자를 보호**하며 **재취업을 지원**하기 위한 **사각지대**를 실질적으로 **해소하는 조치**로서 그 필요성이 크며, - **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**하기 위한 **사회보험료 지원사업**을 운영 중이고, 규제 이행 준비를 위한 **유예기간을 확보**한 점 등을 고려할 때 **'소득기반 고용보험'**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- 지난 30년간 '**소정근로시간**'을 적용해 온 **고용보험**이 '**소득기준**'으로 **전환**되는 만큼, **근로자와 사업주**가 그 **취지**를 **이해**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충분한 **홍보**와 **교육**을 **병행**할 것을 부대권고

규제사무명	**소득기준 미달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**(안 제18조제1항)
논의내용	○ **소득기반 고용보험** 체계 개편을 계기로 **복수 일자리**에 **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**의 **가입기회를 넓혀 취약계층 보호**를 강화하는 조치로, **노동시장 불안정성**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**필수적**임 ○ **소득기준 미달 근로자**의 **소득합산**을 통해 **피보험자격을 인정**하도록 한 것은 **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**와 **취약계층의 보호**라는 **공익적 측면**에서 최소한의 조치임 ○ 다만, **근로자의 신청 여부**에 따라 **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결정**되는 **불확정성**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**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**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바, - **소득합산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을 명확화**하고, 관련 정보를 **사전에 충분히 안내**하여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혼란과 분쟁을 최소화**할 방안이 요구됨
위원회 결정 내용	○ **복수의 일자리**에서 일하는 **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합산**을 통해 **피보험 자격을 인정**함으로써 고용보험 **사각지대 해소**와 **취약 계층의 보호**라는 공익증진 효과가 크고, - **근로자의 자발적 신청**을 통해 **소득합산을 인정**함으로써 단시간·저임금 근로자에게 **실질적인 지원**이 가능하며, **사업주**도 **지급 보수 비례** 원칙에 따라 부담이 **분담**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**원안동의** - 다만, **근로자의 신청 여부**에 따라 **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결정**되므로 **불확정성**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, 시행 초기에는 **합산신청 요건과 절차가 복잡**하다고 인식될 수 있으므로, - **지침** 등을 통해 **가입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**하고,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**안내**할 것을 **부대권고**